

## 교육감 규정 A-420 개정 - 체벌

### I.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

교육감 규정 A-420은 학생에 대한 체벌 사용을 정의하고 금지한다. 규정은 학생 증인의 성명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및 그의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및 학교 자체 조사 완수의 시간을 명확히 한다.

### II. 제안된 개정조항 전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.

본 규정 전문 및 수정조항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:

<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publicnotice/2014-2015/October2014PanelMeeting>

### III.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, 담당실, 주소,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Name: Christopher Dalton  
담당부서: 특별조사 담당실 (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)  
주소: 65 Court Street, Room 922, Brooklyn, NY 11201  
이메일: RegulationA-420@schools.nyc.gov  
전화: 212 374 4143

### IV. 현재 검토중인 개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, 시간 및 장소.

2014년 10월 29일 6:00 p.m.  
Murry Bergtraum High School  
411 Pearl Street Street  
New York, NY 10038